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0123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978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종석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중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은 위 2021. 4. 12.보다 전인 2021. 2. 2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장 최종 송달일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3. 4. 원바디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9. 10. 23. 건설자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3) 피고 B은 피고 A의 설립당시부터 2020. 4. 27.까지 위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아내이고, 2015. 11. 20.부터 2020. 4. 27.까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1) 원고는 2018. 3. 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6,000,000원(이후 200,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한 2019. 3. 6.(이후 2021. 3. 5.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을 위하여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 2) 위 약정에는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임)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호증).
- 3) 피고 A은 2018. 3. 7.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20. 1.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2020. 7. 8.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20. 8. 18. 피고 A을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4) 이후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0원, 미수이자 3,011,519원의 합계 203,011,51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보전비용

대지급금 1,390,519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2021. 3. 6.부터 2021. 4. 1.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466,300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C은 2020. 3.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당시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00,000,000원은 2020. 4. 29.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20. 2. 28. 20,000,000원, 2020. 3. 4. 8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2호증의 1, 2), 2020. 5. 27. 피고 B에게 잔금 중 1,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2호증의 3).

2) 피고 B은 2020. 4.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종전에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으로 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② 채권최고액 1,87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37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순차로 마쳐졌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203,011,519원, 대위지급한 채권보전비용 1,390,519원, 미수위약금 466,300원의 합계 204,868,33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및 그 중 위 대출 원리금 203,011,51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1. 5. 18.까지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가) 피고 B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2020. 3. 4. 피고 C과 사이에 당시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0. 4. 17.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과 전득자인 피고 D의 각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그런데, 이 이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1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제2, 3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 G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금(위 구상금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주장

가) 피고 C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피고 B과 부동산매매 조건을 협의하였고, 2020. 3.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을 감정가를 초과하는 2,200,000,000원(그 중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되, 중도금은 없이 잔금 2,100,000,000원 중 1,700,000,000원은 은행대출로 지급하고, 3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같음하며, 나머지 370,000,000원은 2년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20. 2. 28. 및 2020. 3. 4. 합계 100,000,000원의 계약금, 2020. 4. 17.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 중 1,7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승계하였다. 또한 피고 C은 나머지 잔금 37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D에게 제3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매월 위 남은 잔금의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을 초과하는 370,000,000원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 A, B이 2018. 3. 7.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이 위 보증약정을 기초로 E은행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이 2020.

1.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0. 3. 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인 2020. 7.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됨으로써 이 사건 보증약정 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E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사실, 피고 B이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20. 8. 11.을 기준으로 위 국세 채무와 다수의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769,289,5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채무자의 무자력

1) 피고 B이 2020. 1.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20. 8. 11. 기준 국세 채무, 다수의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769,289,5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초과하는 매매계약 잔금 3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채권 액수가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직후 국세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만 7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마.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부동산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잔금 2,100,000,000원 중 1,700,000,000원은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 400,000,000원 중 도장부스공장 보증금 30,000,000원을 승계하며, 370,000,00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피고 B에게 설정해 주고, 상환은 2년 내에 하되, 그 이자는 은행대출이자에 준하여 피고 B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20. 2. 28. 및 2020. 3. 4.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7. E은행으로부터 합계 1,7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E은행에게 제2근저당권, 피고 D에게 제3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 D에게 매월 925,000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I이 평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기준시점 2020. 3. 17.)이 위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 못 미치는 1,961,56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 총 2,200,000,000원 중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0,00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잔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중 37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로부터 2년간 그 지급이 유예되어 있는 등 그 내용과 체결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은행대출금으로 매매대금 대부분인 1,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0원 중에서 피고 C이 스스로 조달하여 실제로 지급한 액수는 계약금 100,000,000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채무로서 그 실제 채권자가 피고 B이므로, 피고 D을 위 잔금 채권의 채권자로 하여 제3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B의 아내이자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 피고 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 의무는 성질상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1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뿐만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결국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서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을 뺀 나머지 77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피보전채권액)은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사실, ③ 결국 수익자인 피고 C이 취득한 이익은 위 최소 공동담보가액인 77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전득자인 피고 D이 취득한 이익은 제3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자 피담보채권액인 37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그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인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4,868,338원 및 그 중 203,011,519원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인 2022. 12. 1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이용희, 판사 배다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공장용지 1583㎡
2. 경기도 화성시 동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공장
1층 96㎡
2층 100.04㎡
3. 경기도 화성시 동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493.2㎡
4. 경기도 화성시 공장용지 1060㎡
5. 경기도 화성시 공장용지 300㎡
6. 경기도 화성시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98㎡
7. 경기도 화성시 공장용지 1698㎡
8. 경기도 화성시 공장용지 319㎡
9. 경기도 화성시 도로 1080㎡
- 주식회사 지분 540분의 103 -
10. 경기도 화성시 도로 660㎡
- 주식회사 지분 132분의 25 -

